2021 부동산 입법포럼 패널원고

김명수 /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

입법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법의 실효성 문제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이지고 있습니다.

법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법 제2조 제9호 가목) 있어서 안전보건담당임원을 별도로 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참조)을 보면,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건설업(50.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재해 사망자 비율은 전체의 35.2%이지만,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재해 사망자 비율은 1.3%에 불과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한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관련하여, 안전·보건확보의무(제4조)뿐만 아니라 원청과 하청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제5조에서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원청업체의 경영책임자 등은 이 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제6조), 다만 원청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단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조항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문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와 같이 수많은 하청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원청업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에게 하청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입법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률 심사와 해석의 원칙과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